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지법이 개정(법률 제1679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부과 기준금액 및 절차와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3)

- 1)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납부금액 및 납부기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2)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대체초지조성비의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편익을 제고

나.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5)

- 1)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2) 초지전용 후 곧바로 초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용지로 2차 전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관련 검토사항

1) 신설·강화 규제

- 용도변경 승인제도(안 제16조의5)

2) 폐지·완화 규제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3)

라. 기 타

1) 개정안,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법안담당

직 위	성 명	사무실 전화	HP	E-mail
축산정책국장	이주명	044-201-2301	010-6458-5015	leejm66@korea.kr
축산환경자원과장	정경석	044-201-2351	010-3587-4059	godjung7@korea.kr
사무관	남기현	044-201-2352	010-4195-4097	khnam@korea.kr
주무관	김소연	044-201-2354	010-6311-0092	young454@korea.kr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법 제23조제6항”을 “법 제23조제8항”으로,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를 “대체초지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로 한다.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로 하고,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하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납부) ①법 제23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100분의 30을 허가등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납부금액 및 납부기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납부하되, 최종 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하여 기금관리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④기금관리자는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대지급금 등을 대체초지조성비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⑤법 제23조제1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6조의5(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초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③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초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9호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에서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는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대체초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결정·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및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과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초지법 시행령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u>법 제23조제6항</u> 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신고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u>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u>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등) ①----- --- <u>법 제23조제8항</u> ----- ----- ----- ----- ----- <u>대체초지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u> ----- ----- -----.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납부) ① <u>법 제23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u>
	② <u>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100분의 30을 허가등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u>

현행	개정안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납부금액 및 납부기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u> <u>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하여 기금관리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u>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 (생략) <신설>	④기금관리자는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대체초지조성비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⑤법 제23조제1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6조의4 (현행 제16조의3과 같음) 제16조의5(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현행	개정안
	<u>된 날, 그 밖의 초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u> <u>③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초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9호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u> <u>2.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에서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u> <u>④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u>

현 행	개 정 안
	<u>내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는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대체초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u> <u>⑤제4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결정·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u>
<u>제16조의4 ~ 제16조의6 (생략)</u>	<u>제16조의6 ~ 제16조의8 (현행 제16조의4 및 제16조의6와 같음)</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및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과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연 락 처	(044) 201 - 2352